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98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서-850-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0-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바이젠셀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7-07720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길 66, 9층, 1013-1020호, 11층(가산동, 더리즌밸리 지식산업센터)		
	대표자 기평석		
확인내용	명칭 VT-EBV-N(자가 EBV 특이 세포독성 T 세포치료제)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주요내용 상업용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자가면역치료제를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구역 (세포처리) 바이젠셀 주식회사, (치료실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기간 2년		
	규모 대상 환자 15명 이내		
	조건 ○ 실시현황 기록, 보고 등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하는 실시기준 준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6-82-0216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여의도동)		
	대표자 강원경		
확인내용	명칭 VT-EBV-N(자가 EBV 특이 세포독성 T 세포치료제)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주요내용 상업용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자가면역치료제를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구역 (세포처리) 바이젠셀 주식회사, (치료실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기간 2년		
	규모 대상 환자 15명 이내		
	조건 ○ 실시현황 기록, 보고 등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하는 실시기준 준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솔타메디컬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44-88-0230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3층, 8층 (대치동)		
	대표자 한상진		
확인내용	명칭 의료용 냉각가스 접합용기 수입·판매 및 사용 실증		
	주요내용 의료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가스가 충전된 접합용기의 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17조, 제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별표10), 제9조의2 「KGS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구역 용기 제조자(ITW Sexton, 미국 앨라배마 주), 수입·판매처(솔타메디컬코리아, 서울 강남구), 보관창고(지오영, 경기 김포시) 및 사용처(국내 피부과)		
	기간 2년		
	규모 2년간 326,000개 내외		
	조건 ○ **(고법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용기 등의 제품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다만, 사업자가 실증특례 목적으로 수입한 의료용 냉각가스 접합용기는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제 대상 ※ 추가 안전조치 • **(용기)** 용기제조, 충전가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자체 안전위원회에서 해외기준* 및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추가 안전조치사항 반영 * DOT-SP-10232, DOT 2Q, 고압가스보안법 등 • **(운반)** 용기운반 시 이상 상태 발생을 대비한 안전기준 및 DOT 특별 허가에 관한 운반기준을 추가 안전조치사항에 반영 • **(사용)** 실증 용기 보관·사용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사업자(솔타메디칼)가 안전관리 사항 마련하여 실시 ○ **(타법준수)** 실증에 포함되는 의료용 냉각가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의료용 냉각가스 용기 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 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의료용 냉각가스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소급효 배제)** 본 실증특례는 확인서 발급일 이후 「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 부대조건에 따라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 수입·통관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본 실증특례 부여 이전에 국내에 반입되어 보관·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취급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2-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2-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4-82-05972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장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표자 홍기용		

확인내용

명칭 LCO_2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의 해상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육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저장탱크 내 허가받은 고압가스 외 물질에 대해서는 저장 및 이입이 불가능하며, 교차저장 시 마다 저장 대상의 품명 등의 변경 신고가 필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제2항

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 시스템 1식
- 메탄올 저장탱크, 액화이산화탄소 저장 탱크, 이종화물탱크 각 1기
- 열교환 및 운전·안전 장비

조건

○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조건으로 실증 개시 수용

○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

○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을 해상 환경(선박 운송)에 적용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증기간에 국한하여 육상 실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개발된 선박 내 관련 시스템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 ·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실증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술·경제·환경 등 관점에서 개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 위험물(메탄올) 저장 탱크 : 기초·지반, 인화성, 전도·이동성, 보유수평내력 등
└ 액화가스(LCO_2) 저장 탱크 : 고압, 저온, 취성파괴, 과압 상승 등

** ┌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 산업통상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 또한,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안건보고서 상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만 고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예방 대책 관한 사항이 부재함

○ 따라서,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u>조건으로 실증 개시를 수용함</u>

* △**복합·비정형 사고 가능성**(이중 물품 교차 저장 중 사고, 세정·퍼지 등 물품 전환 작업 중 사고, 잔존물에 의한 반응 사고 등) △**이중 화물 탱크 재질·구조 설계의 불확실성**(인화성 조건과 저온·고압 조건 등 다른 위험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 재질 취성, 부식, 피로 파손 등 안전성 검증 곤란) △**지상 고정식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지상 시설은 인접 설비·건축물·인명과의 이격거리가 고정되어,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선박 대비 크게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ㅇ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됨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ㅇ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이행을 전제로 액화이산화탄소를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메탄올 교차저장하는 실증특례를 허용

ㅇ 부대조건

-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공통사항)**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대상의 가스관계법령의 정비는 해당 없음

  *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고법준수)**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저장탱크(특정설비 검사)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제조시설) 적용

- **(타법준수)**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및「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상호 반응성이 없는 조건하에 실증 추진, 물리적·화학적 성분 차이에 의한 위험요인의 파악 및 해소방안 도출 적용

  * 주요설비들이 고압가스법 등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 및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에 부속된 설비의 경우,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 사용함에 따른 영향 평가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저장탱크의 경우, 교차저장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액화이산화탄소 공급시설의 경우, 기존 고압가스법 안전관리체계 준수

  * 교차저장 실증 시 최대한 잔류물질이 없도록 교차저장 전후 퍼지 작업 등 안전관리절차 마련

  * 저장탱크 충전 한도의 90%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충전량을 늘리면서 실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 적정 여부 검토 등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보고 및 교차저장 실증 저장탱크 폐기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ㅇ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저장탱크는 선박용 저장탱크로 실증 이후 가스관계법령 정비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확인서-85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강림중공업(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59777	
	주소 경상남도 창원서 성산구 연덕로 76(웅남동)		
	대표자 시종민		

확인내용

명칭 LCO_2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의 해상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육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저장탱크 내 허가받은 고압가스 외 물질에 대해서는 저장 및 이입이 불가능하며, 교차저장 시 마다 저장 대상의 품명 등의 변경 신고가 필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제2항

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 시스템 1식

- 메탄올 저장탱크, 액화이산화탄소 저장 탱크, 이종화물탱크 각 1기
- 열교환 및 운전·안전 장비

조건

○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조건으로 실증 개시 수용

○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

○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ㅇ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을 해상 환경(선박 운송)에 적용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증기간에 국한하여 육상 실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개발된 선박 내 관련 시스템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본 실증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술·경제·환경 등 관점에서 개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ㅇ 다만,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 위험물(메탄올) 저장 탱크 : 기초·지반, 인화성, 전도·이동성, 보유수평내력 등
└ 액화가스(LCO_2) 저장 탱크 : 고압, 저온, 취성파괴, 과압 상승 등

** ┌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 산업통상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ㅇ 또한,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안건보고서 상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만 고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예방 대책 관한 사항이 부재함

ㅇ 따라서,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u>조건으로 실증 개시를 수용함</u>

* △**복합·비정형 사고 가능성**(이중 물품 교차 저장 중 사고, 세정·퍼지 등 물품 전환 작업 중 사고, 잔존물에 의한 반응 사고 등) △**이중 화물 탱크 재질·구조 설계의 불확실성**(인화성 조건과 저온·고압 조건 등 다른 위험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 재질 취성, 부식, 피로 파손 등 안전성 검증 곤란) △**지상 고정식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지상 시설은 인접 설비·건축물·인명과의 이격거리가 고정되어,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선박 대비 크게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ㅇ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됨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ㅇ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이행을 전제로 액화이산화탄소를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메탄올 교차저장하는 실증특례를 허용

ㅇ 부대조건

-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공통사항)**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대상의 가스관계법령의 정비는 해당 없음

*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고법준수)**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저장탱크(특정설비 검사)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제조시설) 적용

- **(타법준수)**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및「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상호 반응성이 없는 조건하에 실증 추진, 물리적·화학적 성분 차이에 의한 위험요인의 파악 및 해소방안 도출 적용

  * 주요설비들이 고압가스법 등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 및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에 부속된 설비의 경우,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 사용함에 따른 영향 평가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저장탱크의 경우, 교차저장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액화이산화탄소 공급시설의 경우, 기존 고압가스법 안전관리체계 준수

  * 교차저장 실증 시 최대한 잔류물질이 없도록 교차저장 전후 퍼지 작업 등 안전관리절차 마련

  * 저장탱크 충전 한도의 90%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충전량을 늘리면서 실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 적정 여부 검토 등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보고 및 교차저장 실증 저장탱크 폐기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저장탱크는 선박용 저장탱크로 실증 이후 가스관계법령 정비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확인서-852-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2-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이앤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6-87-007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8, WBC The Palace 102동 1401호		
	대표자 송병근		
확인내용	명칭 LCO_2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의 해상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육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저장탱크 내 허가받은 고압가스 외 물질에 대해서는 저장 및 이입이 불가능하며, 교차저장 시 마다 저장 대상의 품명 등의 변경 신고가 필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제2항		
	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 시스템 1식 - 메탄올 저장탱크, 액화이산화탄소 저장 탱크, 이종화물탱크 각 1기 - 열교환 및 운전·안전 장비		
	조건 ○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조건으로 실증 개시 수용 ○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 ○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을 해상 환경(선박 운송)에 적용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증기간에 국한하여 육상 실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개발된 선박 내 관련 시스템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 ·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실증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술·경제·환경 등 관점에서 개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실증 과정에서 육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종 화물 탱크'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의 물품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 규제부처**별 기술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 위험물(메탄올) 저장 탱크 : 기초·지반, 인화성, 전도·이동성, 보유수평내력 등
└ 액화가스(LCO_2) 저장 탱크 : 고압, 저온, 취성파괴, 과압 상승 등

** ┌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 산업통상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저장 관련 시설·행위기준

○ 또한, 이종 물질의 교차 저장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사안도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 안건보고서 상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만 고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예방 대책 관한 사항이 부재함

○ 따라서, 실증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❶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❷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이후 ❸안전이 담보된 **조건으로 실증 개시를 수용함**

* △**복합·비정형 사고 가능성**(이중 물품 교차 저장 중 사고, 세정·퍼지 등 물품 전환 작업 중 사고, 잔존물에 의한 반응 사고 등) △**이중 화물 탱크 재질·구조 설계의 불확실성**(인화성 조건과 저온·고압 조건 등 다른 위험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 재질 취성, 부식, 피로 파손 등 안전성 검증 곤란) △**지상 고정식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지상 시설은 인접 설비·건축물·인명과의 이격거리가 고정되어,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선박 대비 크게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ㅇ 제시된 실증지표(안)은 '이종 화물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항목 및 측정지표(사고영향 및 빈도 고려)의 보완이 요구됨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ㅇ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이행을 전제로 액화이산화탄소를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메탄올 교차저장하는 실증특례를 허용

ㅇ 부대조건

-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공통사항)** 해당 실증은 선박용 저장탱크의 육상 실증을 한시적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대상의 가스관계법령의 정비는 해당 없음

  * 교차저장 실증 완료 후, 실증 대상 저장탱크는 폐기 또는 재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절차 마련

- **(고법준수)** 선박용 화물창이긴 하나 저장탱크를 육상에서 실증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저장탱크(특정설비 검사)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제조시설) 적용

- **(타법준수)** 육상 교차저장 실증 시설 중 메탄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및「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교차저장 실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도출 및 적용

  *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상호 반응성이 없는 조건하에 실증 추진, 물리적·화학적 성분 차이에 의한 위험요인의 파악 및 해소방안 도출 적용

  * 주요설비들이 고압가스법 등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 및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에 부속된 설비의 경우,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 사용함에 따른 영향 평가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저장탱크의 경우, 교차저장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액화이산화탄소 공급시설의 경우, 기존 고압가스법 안전관리체계 준수

  * 교차저장 실증 시 최대한 잔류물질이 없도록 교차저장 전후 퍼지 작업 등 안전관리절차 마련

  * 저장탱크 충전 한도의 90%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충전량을 늘리면서 실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메탄올 교차저장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 적정 여부 검토 등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보고 및 교차저장 실증 저장탱크 폐기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에 대해 도출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 **실증지표에 대한 의견**

ㅇ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상호반응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 교차저장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저장탱크는 선박용 저장탱크로 실증 이후 가스관계법령 정비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확인서-853-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9-82-01135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대표자 김병석		

확인내용

명칭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주요내용 기체수소 기반시설(연료전지, 저장용기 등)을 지하에 구축 및 운영하여 관련 기술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별표5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KGS FP1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7조, 별표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671)

구역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4-1BL,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1곳

기간 2년

규모 기체수소 활용 수소연료전지 기반시설 지하 1개소

조건

○ 지하에 설치하는 설비 등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고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발전시설의 지하 설치에 관한 실증 허용*

* 2주 간 실증 진행 후, 관련 시설 철거하는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법 제13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112를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가연성 가스의 취급 환경,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법 체계* 준수

* 고법 제4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16조(검사 등)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승인 요청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가스 제품(연료전지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가스설비실 지하 설치의 안전성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3-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재단법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25-82-00701	
	주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 2에프1호(갈현동, KOTITI Aurora Square)		
	대표자 황용우		

확인내용

명칭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주요내용 기체수소 기반시설(연료전지, 저장용기 등)을 지하에 구축 및 운영하여 관련 기술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별표5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KGS FP1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7조, 별표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671)

구역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4-1BL,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1곳

기간 2년

규모 기체수소 활용 수소연료전지 기반시설 지하 1개소

조건

○ 지하에 설치하는 설비 등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고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발전시설의 지하 설치에 관한 실증 허용*

* 2주 간 실증 진행 후, 관련 시설 철거하는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법 제13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112를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가연성 가스의 취급 환경,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법 체계* 준수

* 고법 제4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16조(검사 등)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승인 요청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가스 제품(연료전지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가스설비실 지하 설치의 안전성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4-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06-81-0001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12층(괴동동, 포스코본사)		
	대표자 장인화, 이주태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49,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2-04565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28		
	대표자 김선용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49,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4-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4-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제이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6-81-1265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2214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BT센터)		
	대표자 강득주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49,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2-82-06034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동삼동)		
	대표자 배정철		

확인내용

명칭 액체수소 활용 선박 기자재 및 인수기지 기자재 실증설비 구축

주요내용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기자재와 인수기지에 탑재되는 기자재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액화수소 시험시설 검사 관련 시설·기술 기준 및 기자재 시험시설 관련 평가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제1항·제6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 제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준·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KGS FP112)

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21-36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기간 2년

규모
① 평가지원설비 1식(저장·공급 설비 및 처리 설비)
② 시험·평가 설비 1식(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펌프 등 시험평가)

조건

○ (현행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소 등 실증을 위해 구축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①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②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저장탱크, 기화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액화수소 활용 선박 기자재 및 인수기지 기자재 실증설비 구축 실증을 허용**

○ **(현행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소 등 실증**을 위해 **구축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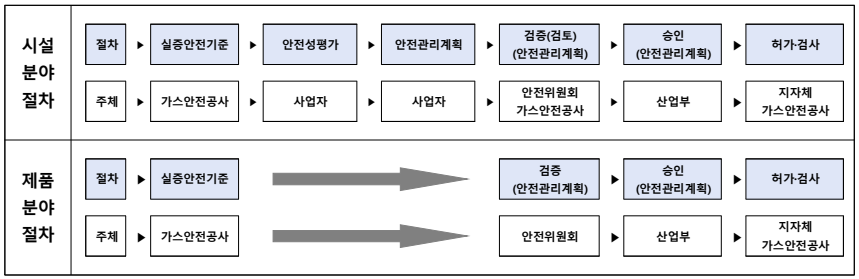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포함 ('사업자 실증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①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②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저장탱크, 기화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확인서-85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1-81-43820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461		
	대표자 조석형		

확인내용

명칭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600℃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제조하는 생산설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항,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및 별표5, 동법 시행규칙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별표 2

구역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소재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기간 2년

규모 가축분뇨 年 18,500톤 처리, 총 5,000톤(年 2,500톤) 바이오차 생산

조건

○ 현행 '가축분뇨법' 상 가축분뇨의 처리유형으로 바이오차 생산을 규정하지 않지만, 바이오차 생산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실증특례 시설이 환경법 상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가축분뇨 바이오차 제도화를 위한 연구에 자료제공 및 실증현황 공유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한편, 가축분뇨 중 계분, 우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실증특례가 기 추진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이오차 생산 시 수질·대기·토양 등 분야별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 만일 본 실증특례가 추진된다면 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분야별 환경영향 분석을 병행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특히, 돈분에는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 분야별 환경영향 분석은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가운데 실시되어 환경 무해성을 검증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유한회사 루디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97-87-03523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20길 53, 4층 401호(두산동)		
	대표자 이희숙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대구광역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2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수완손으로완성하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31-30-00973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50번길 20-6, 1층(장덕동)		
	대표자 김초이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광주광역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5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제임스아르더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7-08-52161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71, 2층(신관동)		
	대표자 박용훈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공주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6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6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라브리지헤어살롱 나주혁신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8-11-83405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B207호(빛가람동, 리치타워)		
	대표자 김수아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I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B207호

기간 2년

규모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6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5월 2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타운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75-86-01580	
	주소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벤처센터 4층		
	대표자 최윤진		

확인내용

명칭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 캠핑카 공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유휴상태의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의 캠핑카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1차년도 500대, 2차년도 2,000대(1차년도 실증규모 500대 포함)

조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 (상세조건 붙임 참조)

ㅇ 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개발팀,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ㅇ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kosta.or.kr)"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 승인된 업체들도 가입·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 등 협조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 임 **실증특례 부가 조건_타운즈**

< 실증특례 부가 조건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캠핑카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타운즈)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타운즈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타운즈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타운즈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타운즈+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타운즈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타운즈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타운즈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함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